

조 례 안 예 고

창원시의회 공고 제2023 - 71호

창원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1일

창원시의회의장 김 이 근

1. 자치법규명

「창원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창원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대상을 폭넓게 규정하여 창원시 세정발전 및 세외 수입 증대에 이바지한 모든 이들에게 징수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함.

3. 주요내용

- 가. 목적에 관한 사항을 재규정함(안 제1조)
- 나. 세입징수포상금 지급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제1항제1호)
- 다. 특별공적에 관한 조문을 정비함(안 제2조제3항제2호)
- 라. 조례의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함(안 제2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 제2조제4항제2호, 제4조제1호, 제8조제1항)
- 마. 지급한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4조제2호)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원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입법예산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51435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의회 의회사무국 입법예산팀(전화:055-225-5375, FAX:055-225-4743)

라. 의견제출 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jeonhr1@korea.kr), 직접 방문 등

창원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남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20
----------	-----

발의연월일 : 2023. 7. 10.

발 의 의 원 : 김남수 · 김경희 · 김묘정 · 김상현 · 문순규
박해정 · 백승규 · 서명일 · 오은옥 · 이원주
이종화 · 전홍표 · 정순욱 · 진형익 ·
최은하 의원(15명)

1. 제안이유

창원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대상을 폭넓게 규정하여 창원시 세정발전 및 세외수입 증대에 이바지한 모든 이들에게 징수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에 관한 사항을 재규정함(안 제1조)
- 나. 세입징수포상금 지급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함
(안 제2조제1항제1호)
- 다. 특별공적에 관한 조문을 정비함(안 제2조제3항제2호)
- 라. 조례의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함(안 제2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 제2조제4항제2호, 제4조제1호, 제8조제1항)
- 마. 지급한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4조제2호)

3. 참고사항

- 가. 신 · 구조문 대비표
- 나. 관계 법령
- 다. 현행 조례

창원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무원 및 민간인”을 “사람”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공무원(별정직, 임시직, 임기제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창원시 소속 직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공무원 또는 민간인”을 각각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공무원”을 “공무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세무공무원”을 “공무원등”으로 한다.

2.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에 따라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제4조제1호 중 “공무원간”을 “공무원등 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단서 중 “제2조제1항제1호의 임기제 공무원(비정규 민간인 임기제 포함)인”을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등의”로 한다.

제8조제1항 후단 중 “관계공무원”을 “공무원등”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u>공무원</u> 및 <u>민간인</u>에 대한 창원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u>사람</u>----- ----- ----- -----.</p>
<p>제2조(지급대상) ① (생략)</p> <p>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u>공무원(별정직, 임시직, 임기제 공무원을 포함한다)</u></p> <p>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직접 현장 조사 후 찾아내어 부과한 <u>공무원 또는 민간인</u></p> <p>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u>공무원 또는 민간인</u></p> <p>4. (생략)</p> <p>5. 「지방세징수법」 제18조의 징수촉탁제에 따른 징수촉탁수수료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u>공무원</u></p>	<p>제2조(지급대상) ① (현행과 같음)</p> <p>1. ----- ----- <u>창원시 소속 직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u></p> <p>2. ----- ----- <u>사람</u></p> <p>3. ----- ----- <u>사람</u></p> <p>4. (현행과 같음)</p> <p>5. ----- ----- <u>공무원 등</u></p>
<p>②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생략)</p>	<p>③ (현행과 같음)</p>
<p>1. (생략)</p>	<p>1. (현행과 같음)</p>

2.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

④ (생략)

1. (생략)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3. (생략)

⑤·⑥ (생략)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따른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의 임기제 공무원(비정규 민간인 임기제 포함)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 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제8조(환수) ① 시장 또는 구청장은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2.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에 따라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④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공무원등-----

3. (현행과 같음)

⑤·⑥ (현행과 같음)

제4조(지급한도) -----

-----.

1. -----
-----공무원등간-----

2. -----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등의 -----
-----.

제8조(환수) ① -----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③ (생략)

-----.

----- 공무원등 -----

-----.

②·③ (현행과 같음)

■ 지방세기본법

제146조(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稅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4.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부과·징수에 또는 지방세조합장이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1호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납세자의 부도·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
2. 자료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3. 그 밖에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등

④ 제1항제2호에서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1. 「지방세징수법」 제39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3.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⑤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과 주소를 분명히 적고 서

명하거나 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료 제공자 또는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과 제5항에 따른 신고기간, 자료 제공 및 신고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지방자치법」 제178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립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포상금 관련 규정(規程)으로 정한다.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세조합장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포상금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물품도 지방세의 납부 등 세수 증대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지급할 수 없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포상금의 지급) ①법 제14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탈루세액등	지급률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100분의 15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500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5억원 초과	5,500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②법 제14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징수금액	지급률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100분의 15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50만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1억원 초과	1,250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③ 법 제14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은 현금지급, 이체입금 등의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④ 법 제14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탈루세액등의 경우에는 3천

만원, 징수금액의 경우는 1천만원을 말한다.

⑤ 법 제146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과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등
2. 그 밖에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등

⑥ 법 제146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등록된 국내에 있는 재산을 말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지방자치법」 제178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포상금 관련 규정(規程)으로 정한다.

■ 창원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창원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창원시 세입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 임시직, 임기제 공무원을 포함한다)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직접 현장 조사 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게 한 민간인
5. 「지방세징수법」 제18조의 징수촉탁제에 따른 징수촉탁수수료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3항에 따른 특별공적이 없이 체납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체납세액 고지서를 발송하고 납부기한 내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의 공매 또는 경매 의뢰 결과 배당금을 수령하여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배당이의 등 특별한 노력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으로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공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으로 제5조에 따른 시·구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창원시 세입금(시세와 세외수입을 말한다)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납부 독려, 체납처분,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 제공,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지방세기본

법」 제111조에 따른 고발 또는 그 밖의 관련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2.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

④ 제1항제4호에서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예금·주식 그 밖에 재산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지방세징수법」 제39조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3.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된 국내소재 부동산

⑤ 제1항제4호에 따른 신고는 성명 및 주소를 명확하게 적고 서명날인한 문서로 해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해야 한다.

⑥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 취득을 포착 부과한 경우(“미등기 취득”이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등기 절차를 마쳤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하여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7. 징수촉탁수수료로 교부받은 금액의 100분의 10

8.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로 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사람에게도 지급한다. 다만,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따른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의 임기제 공무원(비정규 민간인 임기제 포함)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 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제5조(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시 본청에 창원시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구청에 창원시 OO구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4명 이상 6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 본청에서는 세입업무 담당국장, 구청에서는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 하며, 시 본청에서는 시장이 위촉하고 구청에서는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
2.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
3. 제4조에 따른 지급한도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⑥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지급신청) ① 삭제

② 제3조 각 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포상금지급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④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권이 있는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한다.

제7조(포상금 지급) ① 시장 또는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르되, 신청자의 계좌로 지급한다.

제8조(환수) ① 시장 또는 구청장은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로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 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9조(대장비치) 세입징수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징수촉탁 수수료 세입 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